

2001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12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11. 30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제안이유

- 고성군재해대책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사전점검과 정비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 예방위주의 방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함
- 2002년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하천정비사업비 30,000천원으로 재해위험지구 또는 긴급 재해시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코져 함.

2. 주요골자

- 기금구성
 - '97 ~ 2001 총 기금조성액 : 136,501,760원
 - '97 ~ 2001 법정기금조성액 : 393,173,000원
 - '97 ~ 2001 기금 이자수립 : 43,328,760원
 - 2001 기금사용액 : 300,000,000원
 - 2002년 법정기금 예산액 : 69,733,000원
- 2002기금사용계획 : 재해사전대비 하천정비 : 30,000,000원

3. 의결요청(안) : 덧붙임

2002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(안)

1. 기금의 조성 현황

(단위 : 원)

년도별	재 원	조 성 액			기금 관리방법	예치금융 기관	비 고
		계	원금	이자			
계		436,501,760	393,173,000	43,328,760			
'97	고성군 당초예산	48,700,000	48,700,000		정기예탁 (이율 4.5%)	농협 고성군지부	증식용
'98	"	58,637,000	58,637,000		"	"	"
'99	"	63,163,000	63,163,000		"	"	"
2000	"	66,147,000	66,147,000		"	"	"
2001	2000수해복구 도비보조	90,000,000	90,000,000		일시예탁	"	사업비 총당용
2001	"	109,854,760	66,526,000	43,328,760	정기예탁50% 일시예탁50%	"	증식 및사업비 총당용

2. 기금의 사용현황

(단위 : 원)

년도	용 도	사 용 액	집 행 액 (2001.11월현재)	비 고
	계	300,000,000	67,405,130	
2001	소하천정비 종합정비계획	180,000,000	-	'00.11.29일기금운용 심의위원회승인
	2000수해복구사업	120,000,000	67,405,130	01.5.2일기금운용심 의위원회승인

※사용액중 미집행액에 대하여는 2002.2.28일까지 집행계획

3. 기금의 조성 계획

(단위 : 원)

구 분	조성액	관 리 계 획
계	213,429,590	
기 조 성	136,501,760	○ 기조성된 기금중 2001년도 분에 대하여는 50% 이상 증식기금으로 예치하고 잔여분은 재해시 긴급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
2002당초예산	69,733,000	○ 2002 년중 정기에탁기간이 만료되는 「증식용기금」과 통합하여 50%이상은 신규로 정기 예탁하고 잔여분은 일시에탁
기금운용수입 (예상)	7,194,830	○ 기금 이자 수입으로서 사업비 충당을 위해 일시 예탁관리

4. 기금의 사용 계획

기금조성액			사용계획		비 고 (잔액)
계	기조성	2002년분	사용액	용도	
213,429,590	143,696,590	69,733,000	30,000,000	○재해사전대비를 위한 하천정비사업비 - 대 상 : 219개소 - 총연장 : 252,7km	183,429,590

※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상 사용기준

- ①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은 가급적 『사업비 충당금』으로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인다.
- ② 기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.
 - 1)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, 정비를 요하는 사업
 - 2)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
 - 3)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
 - 4)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, 수문, 배관, 우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
 - 5) 하수도시설(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)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

- 6) 수리시설중 배수장, 방조제, 용수로,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
- 7)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

5. 기금의 운용 방법

- ①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
- ② 조성된 기금은 기금 총액의 50/10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총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수 있도록 예탁관리
- ③ 기금의 지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로서 지출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